

영등포구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발의】



2019.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21호로 2019년 6월 5일 고기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7. 12. 29. 공포, 2018. 6. 30. 시행)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 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구정운영주요핵심사업 등 구민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정책수행자 실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9조)
- 다.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

-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내용 등을 홍보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정책실명제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부터 제63조의 5까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요정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정책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위임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제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의 정책 참여자를 실명 등록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